

[별첨 1]

『유통법연구』 원고작성방법

1. 편집용지(A4)의 여백주기 (훈글에서 F7 키를 누름)
 - 위쪽: 55, 아래쪽: 54, 왼쪽: 51, 오른쪽: 51, 머리말: 10, 꼬리말: 10, 제본: 0.
2. 글자모양
 - 서체: 신명조, 자간: 0, 장평: 90, 크기: 10.
3. 문단모양
 - 왼쪽: 0, 오른쪽: 0, 들여쓰기: 2, 줄간격: 160, 문단 위: 0, 문단 아래: 0, 낱말간격: 0, 정렬방식: 혼합.
4. 목차의 순서
 - I (‘큰제목’으로 설정)
 - 1. (‘중간제목’으로 설정)
 - (1) (‘작은제목’으로 설정)
 - 1) (‘아주작은제목’으로 설정)
 - (가) (‘바탕글’로 설정)
 - 가) (‘바탕글’로 설정)
 - i) (‘바탕글’로 설정)
5. 각주의 표기방법
 - 저서의 인용: 저자명, 「서명」, 출판사, 출판년도, 인용면수.
(예: 홍길동, 「유통법I」, 유통출판사, 2014, 100면.)
 - 정기간행물의 인용: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「잡지명」, 제○권 ○호, 출판년도, 인용면수.
(예: 홍길동, “유통법의 개념”, 「유통법연구」, 제1권 1호, 2014, 100면.)
 - 판결의 인용: 대법원 20○○.○○.○○. 선고, ○○다○○판결. 또는 대판 20○○.○○.○○, ○○다○○.
 - 외국논문, 외국판결 및 법조항인 경우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, 판결 및 법조항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합니다.
 - 신문기사의 인용: 신문명, “기사제목”, 일자, 인용면.
(예: 유통일보, “유통활성화를 위하여”, 2014. 2. 1., A3면.)
 - 동일문헌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: 저자명, 앞의 논문(또는 앞의 책), 인용면.
(예: 홍길동, 앞의 논문, 60면.)
6. 저자의 표기

- 논문의 제목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*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합니다.
 - 공동연구논문의 경우에 책임연구자와 연구자가 나뉘어 지는 경우 각주란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.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자 전원이 책임연구자인 것으로 봅니다.
7. 참고문헌의 표기
- 논문의 본문 뒤에 중요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목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.
8. 논문초록의 표기
- 논문의 본문 뒤에 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논문초록에는 초록작성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.
9. 주제어의 표기
- 논문초록의 뒤에는 주제어(Keywords)를 국문과 괄호 안에 영문(또는 독일어, 프랑스어)을 병기하여 5개 이상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임원명